

1. 개정이유

정부조직관리지침(임시조직 설치·운영 지침)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"인재개발과장, 천안소방종합훈련단(이하 "훈련단"이라 한다)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(이하 "훈련단장"이라 한다)"을 "인재개발과장"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나. "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의"를 "인재개발과장의"로,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고하여"를 "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"로,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이상"을 "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"으로 변경(안 제6조)
- 다.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"을 "인재개발과장"으로 변경(안 제11조, 제12조,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1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천안소방종합훈련단(이하 "훈련단"이라 한다)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(이하 "훈련단장"이라 한다)"을 "1일전까지 인재개발과장"으로 한다.

제6조 중 "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의"를 "인재개발과장의"로,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고하여"를 "인재개발과장에게 신고하여"로,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이상"을 "인재개발과장에게 이상"으로 한다.

제11조 중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"을 "인재개발과장"으로 한다.

제12조 중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"을 "인재개발과장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"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"을 각각 "인재개발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도교수요원 근무 변경) 지도교수요원 근무 명령을 받은 지도교수요원이 부득이한 사정 으로 수명기간에 지도교수요원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<u>1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의 경</u> <u>우 인재개발과장, 천안소방종합</u> <u>훈련단(이하 “훈련단“이라 한</u> <u>다)의 경우 천안소방종합훈련단</u> <u>장(이하 “훈련단장“이라 한다)</u> 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도 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지도교수요원 근무 변경)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일전까지 인재개발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지도교수요원 신고) 지도교 수요원은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<u>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</u> <u>훈련단장의</u>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종료 10분전에 <u>중앙소</u> <u>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</u> <u>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신</u> <u>고하여</u> 당일 지도교수요원 근무 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<u>중앙소방학</u> <u>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</u> <u>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이상</u>	제6조(지도교수요원 신고) ----- ----- <u>인재개발과장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인재개</u> <u>발과장에게 신고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재개발과</u> <u>장에게 이상</u> ----- -----

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
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고조치) 지도교수요원은
학생들의 합숙생활에 관하여는
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
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
중대한 사고는 즉각 중앙소방학
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
단의 경우 훈련단장과 학교장에
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
다.

제12조(외출의 허가) 지도교수요
원이 학생에 대하여 긴급 부득
이한 사유로 외출 또는 외박을
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중앙
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
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보
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동태파악) ① 지도교수요
원은 학생 중 내무생활에 특히
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
경우에는 이를 지도교수요원 근
무일지에 기록하여 중앙소방학
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
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보고하
여야 한다.

-----.

제11조(사고조치) -----

----- 인재개발과
장-----

-----.

제12조(외출의 허가) -----

----- 인재
개발과장-----

-----.

제14조(동태파악) ① -----

----- 인재개발과
장-----

-----.

② 학생이 모든 규칙을 위반함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위반학생의 자인서 등을 받아 중앙소방학교의 경우 인재개발과장, 훈련단의 경우 훈련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 인재개발과장-----

-----.